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경과조치 자격기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경과 조치 자격 기준	1. 실시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6월 22일 2. 자격기준 경과조치에 따른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1항, 2항, 3항,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항.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2항.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 3항.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항. 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
세부 기준	◎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준 (1)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기반 치료를 연간 30회기 이상(개인세션 20회기 이상 포함) 수행한 경우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이 인정된다. (2)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빙한다.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①-1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수행 확인서 ②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 ③ 기타 인지행동치료기반 임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